고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시보

【제 1161 호】

2015년 03월 10일 (화)

선람	기 관 의 장

회 람							

차 례

고 시

고양시 고시 제2015-75호 — 도로명주소 고시 — 1

공 고

고양시 공고 제2015-346호 —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— 5

발행 : 고 양 시 편집 : 공보담당관

(우) 412-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(주교동) ☎ (031) 8075-2095

고양시 고시 제2015 - 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제1항,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3월 10일

고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221-16 외 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
별 지 참 조			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변경일	변경사유
별 지 참 조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(☎8075-3096~8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3.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

연 번	종 전 주 소	도 로 명 주 소	도로명주소고시일	도로명고시일	부 여 사 유	비 고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52-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221-16	20150310	20090911	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41-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62	20150310	20131022	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	
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41-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64	20150310	20131022	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	
4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45-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1로 48-30	20150310	20120601	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21-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46-13	20150310	20120601	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
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						
연번	종전 주소(지번주소)		도로명주소(새주소)	관련지번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	변 경 전	변 경 후				
1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48-2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48-3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95	2015.3.10.	토지분할로 인한 관련지번 변경	
2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8-22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8-27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323-16	2015.3.10.	토지분할로 인한 관련지번 변경	

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

연번	지번 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변경일	변경 사유
1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8-27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323-16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4-24	2015.3.10.	주출입구 변경(건축물분리)
2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8-16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4-26, 14-30, 14-38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4-38	2015.3.10.	토지합병
3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8-16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4-38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323	2015.3.10.	주출입구 변경(건축물분리)

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

고양시공고 제2015-346호(2015. 3. 10.)

고 양 시

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

제1조(목적) 「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(이하 “조건”이라 한다)」은 고양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근로자의 고용·보호 등에 관하여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건은 고양시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청소, 경비, 시설물관리,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용역 등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종업원의 신분)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.

③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.

제4조(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등)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<별표 1>의 ‘근로조건 이행확약서’를 제출하고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확약서의 제출은 적격심사 시 또는 용역계약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②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, 계약의 해제·해지 등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종업원의 고용)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양시에 주소를 둔 고양시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고용을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<별표 2>의 ‘고양시민 인력 우선고용 제외 승인신청서’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
③용역감독은 고양시민 인력 우선고용에 대하여 제외 승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류와 승인에 관한 문서를 계약부서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근로자 임금) ①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·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.

제7조(법정부담금 별도반영)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, 의료보험, 국민연금,

산재보험,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8조(용역업체 관리) ①시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·지도할 수 있다.

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의 확인·지도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정보공개 및 자료제출) ①시장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진행상황 보고)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,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·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안전 및 보안사항)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,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시 시장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.

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,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,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·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위생시설 등 설치) ①시장은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9조제9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고양시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.

②계약상대자는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계약상대자는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79조의2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세면·목욕시설·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.

제13조(양도와 재하도급 금지)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,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.

제14조(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) ①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(이하 “국민건강보험료 등”이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.

②시장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손해배상 책임) ①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·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시장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.

제16조(계약의 해제·해지) ①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·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(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)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약해제·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·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.

②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고양시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
2. 본 용역계약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
3. 계약상대자가 청소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(면허를 포함)을 상실하였을 때
4.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

제17조(분쟁의 해결) ①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이나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.

③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건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근로조건 이행확약서

1.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“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”을 지급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2. 「근로기준법」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① 퇴직금, 의료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.

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.

③ 「근로기준법(제107조 내지 제114조)」 및 「최저임금법(제28조)」을 준수하겠습니다.

3.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(계약상대자) 주 소:

회사명:

대표자: ㊞

[별표 2]

고양시민 인력 우선 고용 제외 승인신청서

용 역 명	
계약금액	금 원
용역기간	. . . ~ . . .

위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용역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고양시민 인력 우선고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하기 곤란하여 제외 승인을 요청합니다.

고양시민 인력 우선 고용 제외 사유
(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입증서류 첨부)

붙 임 : 제외 관련 입증서류 1부(별첨)

2015년 월 일

계약상대자

상 호 :

대표자 : ㊞

고양시 재무관 귀하

제외승인여부	여 부
승 인 자	용역감독관 : 소속 직급 성명 ㊞